

제23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2018. 10. 02.~10. 18.

조례안상정

(조례 10건)

거창군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18-61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8-62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18-63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018-64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2018-65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5
2018-66	거창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43
2018-67	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47
2018-68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2018-69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5
2018-70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61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용역결과를 전국적으로 공유·활용하고, 법령 입안기준에 맞게 조문 배열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 입안기준의 위원회 규정순서에 따라 조문 순서를 정비함
(안 제3조~제10조)

위원회 설치→기능→심의대상→구성→임기→해촉→제척·기피·회피
→위원장 직무→회의

나.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

위임근거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과 단어를 순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8. 10.~8. 3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를 “거창군 용역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각종 용역의 사전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용역을 사전에 심의하여 그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역”이란 효율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기능) ①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용역 사업비의 적정성과 용역기간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3. 용역 과업 지시서 내용의 적정성과 적합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 제4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종전 제4조) 제1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종전 제4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위촉위원이 결원이 될 때”를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로 한다.

제5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중전 제5조)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장은”을 “군수는”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을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를 “질병 등으로 인하여”로 한다.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예산·기업지원·재무·건설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2.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종사자 4명 이상

제7조를 제4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 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천만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위한 용역

나.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정밀 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등의 용역

다. 도시계획사업의 확정 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 사업 집행에 따른 용역

2. 1천만원 이상인 평가·자문·지도·사업관리 용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 4.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인 용역
- 5. 국비·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
- 6.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용역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9조(중전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0조를 제8조로 하고, 조 제목 “(제척·회피)”를 “(제척·기피·회피)”로 하며, 제8조(중전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제1항 중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을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업무 부서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용역방법 및 용역기간 등 당해”를 “용역 방법·기간 등 해당”으로 “제반”을 “모든”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중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을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용역결과 공개) 소관업무 부서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중 “위원 및”을 “위원,”으로 “인지한”을 “알게 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u>	<u>거창군 용역 관리·운영 조례</u>
<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거창군이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사전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u>제1조(목적)</u> ----- -----용역을 사전에 심의하여 그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 ----- ----
<u>제2조(용어의 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도로, 하천, 상·하수도, 관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 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사업 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6. "평가안전진단시험 등 용역"이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정밀 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등의 용역을 말한다.	<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용역”이란 효율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①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용역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기업지원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1명,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종사자 4명 이상을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이 결원이 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 2.~4. (생략)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각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이 따로

제3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기능) ①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용역 사업비의 적정성과 용역기간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3. 용역 과업 지시서 내용의 적정성과 적합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삭제>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 2.~4.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용역 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3. 용역 과업 지시서 내용의 적정성과 적합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예산·기업지원·재무건설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2.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종사자 4명 이상
제7조(심의대상) 용역심의 대상은 제2조에 따른 용역 중 용역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 및 평가안전진단 시험 등 용역과 사업집행 용역으로 하되, 평가·자문·지도 및 사업관리 업무는 1건당 예정금액이 1천만원 이상의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 심의로 대체한다. 1.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 및 투융자 심사를 이미 받은 사업 2. 국고 및 도비 보조 용역 3.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4.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제4조(위원회 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천만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용역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위한 용역 나.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정밀 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등의 용역 다. 도시계획사업의 확정 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 사업 집행에 따른 용역 2. 1천만원 이상인 평가·자문·지도·사업관리 용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 심사를 받은 사업 4.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인 용역 5. 국비·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 6.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용역

<u>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u> ②~③ (생략) <u>제9조(회의) ①~④ (생략)</u> <u>제10조(제척·회피) ① (생략)</u> <신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u>제11조(심의요청 등)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용역과제 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u>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간 등 당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u>제13조(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② (생략) <u>제14조(용역결과 관리) 소관업무 부서</u>	<u>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u> ②~③ (현행과 같음) <u>제10조(회의) ①~④ (현행 제9조와 같음)</u> <u>제8조(제척·기피·회피) ① (현행과 같음)</u> ②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 ----- ----- ----- ----- <u>제11조(심의요청 등)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업무 부서장”이라 한다)-----</u> ----- ② ----- ----- -----용역 방법·기간 등 해당----- -----모든----- ----- ③ ----- 경우----- <u>제13조(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② (현행과 같음) <u>제14조(용역결과 관리) -----</u>
--	---

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고, 기획감사실장은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시책개발과 사업추진----- -----
<u><신 설></u>	<u>제15조(용역결과 공개)</u> 소관업무 부서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u>제15조(수당과 여비)</u>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거창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u><삭 제></u>
<u>제16조(비밀엄수)</u> 용역과제 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u>인지한</u>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u>제16조(비밀엄수)</u> ----- -----위원,----- -----알게 된-----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62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국(局) 설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현안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국(局)을 신설하는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국(局)을 설치하고 그 분장 사무를 정함.

나. 지역현안과 행정수요에 맞추어 담당관을 설치하고 과를 조정함.

다. 기구 조정

1) 당초 : 2실·11과, 1의회, 2직속기관, 4사업소, 12읍·면

2) 조정 : 2국·1담당관·14과, 1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12읍·면

라. 정원 총수 조정

1) 정원 총수 : 679명 ⇒ 702명(증 23)

2) 집행기관 정원 : 665명 ⇒ 688명(증 23)

마.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1) 일반직 5급 정원 : 35명 ⇒ 38명(증 3)

가) 현행 : 35명(본청11명, 의회3명, 직속기관5명, 사업소4명, 읍1명, 면11명)

나) 조정 : 38명(본청15명, 의회3명, 직속기관5명, 사업소3명, 읍1명, 면11명)

2)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 608명 ⇒ 628명(증 20)

가) 현행 : 608명(본청268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1명, 사업소49명, 읍39명, 면140명)

나) 조정 : 628명(본청300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1명, 사업소37명, 읍39명, 면140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12조~제114조, 제120조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6조·제24조·제29조·제30조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예산 169백만원 확보

다. 협 의 : 전 부서 협의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8. 30.~9. 18.
 - 나) 예고결과 : 결과요약서 붙임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 토의견	처리결과
김 훈 규 (거창군농업 회의소)	○ 최근 행정조직 개편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공동체 업무의 총괄조정 부서 신설하는 추세이기에 ○ 거창군 또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설치가 요구되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내의 농촌마을 개발과 마을만들기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가 요구되는 도시재생업무 등을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 개발주도의 업무를 극복하고 농촌형의 유니버설(보편적)한 디자인과 지속가능한 공동체 복원, 일자리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의 재배치가 요구됨. ○ 도시재생팀과 통합하여 디자인 도시과(또는 마을디자인과) 등의 명칭을 참작하여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 총괄적 업무를 관장케 하는 것을 제안	○ 우리군은 이번 조직 개편시 상부기관과 관련있는 부서에 업무를 두어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가하고 공모사업 선정, 국도비 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함 ○ 소관부서 - 도시재생업무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경상남도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 지역공동체업무 :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경상남도 경제통상국 지역공동체과 - 일반농산어촌개발업무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경상남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 미반영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와 제120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담당관·과장·소장 직급 등) 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읍장·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제3조(담당관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군수 소속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둔다.

제4조(국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을 둔다.

제5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 미래전략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를 둔다.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직·인사 운영, 직원 복무·후생복지, 대외협력, 정보전산 등 행정에 관한 사항
2. 군 현안·역점 사항 추진, 기업지원, 승강기산업 육성, 투자유치 등 미래 전략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교육진흥, 평생학습, 청소년 보호육성, 도서관 관리·운영 등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
4. 민원행정, 지적민원, 새주소사업, 식품·공중위생, 지적재조사 등 민원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부과, 경리·계약, 세입관리, 공유재산관리, 개별 주택·공시지가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축제, 관광정책, 문화재보존, 박물관·수송대 등 문화관광에 관한 사항
7. 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8.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아동·보육 등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경제산업국) ① 경제산업국에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를 둔다.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장·경제,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에너지정책, 교통행정·운수 등 경제 교통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관리정책, 재난대응총괄, 재해복구, 안전점검, 민방위, 통신· CCTV 관제 등 안전에 관한 사항
3. 산림사업, 화강석 육성, 산림보호, 공원·녹지 조성관리, 향노화 등 산림에 관한 사항
4. 환경정책, 환경보존, 폐기물 관리, 수질·토양 개선, 자연환경보전, 야생 동물 보호, 창포원 운영 등 환경에 관한 사항
5. 건설행정, 농업기반조성, 하천, 도로 등 건설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건축 사업·행정, 건축 허가·신고 등 도시건축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농업기술센터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정,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

② 농업기술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에 둔다.

③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를 둔다.

제8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업정책, 농지 보존·이용에 관한 사항
2. 농촌지도사업, 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산행정, 축산기술 지도·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가축질병, 방역 등에 관한 사항
5. 농업 기계화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등에 관한 사항
6. 식량작물, 농작물 재해 등에 관한 사항
7. 원예, 특용작물 등의 생산·재배·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8. 과수재배 신기술 보급, 과수 시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9.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기술 벤처농업, 특화작물에 관한 기술개발·지도에 관한 사항
11. 농촌진흥,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항
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13. 농산물 수출과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14.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사항
15. 귀농, 귀촌에 관한 사항
16. 학교급식, 로컬푸드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농업·농촌 발전, 시험연구, 농촌진흥에 관한 사항

제2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11조(소장 등) 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과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을 둔다.
-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의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2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사업소

제1절 수도사업소

- 제1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상수도과 하수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수도사업소를 둔다.
- ② 수도사업소는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에 둔다.

- 제14조(소장) 수도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5조(소관사무) 수도사업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상수도·하수도 공기업 경영, 상수도·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2절 체육시설사업소

제16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체육시설사업소를 둔다.

② 체육시설사업소는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에 둔다.

제17조(소장) 체육시설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체육시설사업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스포츠레저 정책수립·활성화
2. 스포츠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3절 거창사건사업소

제19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거창사건사업소를 둔다.

② 거창사건사업소는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2924에 둔다.

제20조(소장) 거창사건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소관사무) 거창사건사업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거창사건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2. 거창사건희생자 묘역과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22조(읍·면) ① 법 제120조에 따라 읍·면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 사무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읍장·면장) 읍·면에는 읍장·면장을 두고 읍장·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소관사무) 읍장·면장은 행정능률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주민 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반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분장한다.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25조(정원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02명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 정원: 688명
2. 의회사무기구 정원: 14명

제26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7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6급 이하와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부서 통폐합·신설과 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과 분장사무 조정으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④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기업지원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⑥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복지정책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행복나눔과장”으로 한다.

⑦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평생교육센터소장”을 “인구교육과장”으로 한다.

⑧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⑨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민원소통과장”으로 한다.

⑩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소통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민원소통과장”으로 한다.

⑪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2조제4항 제1호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소통과장”으로 한다.

⑫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⑬ 거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⑭ 거창군 아람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⑮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⑯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⑰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⑱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⑲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가목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⑳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㉑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농촌진흥과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센터소장”을 “기획예산담당관, 행복농촌과장, 보건소장, 인구교육과장”으로 한다.

㉒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평생교육센터소장”을 “인구교육과장”으로 하고, 제20조제1항제4호 중 “(민원봉사실)”을 “(민원소통과)”로 하고, 제20조제1항제6호·제7호·제8호·제10호 중 “(평생교육센터)”를 “(인구교육과)”로 한다.

㉓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민원봉사실장”을 “민원소통과장”으로 한다.

㉔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기업지원과장”을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㉕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업지원과장”을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㉖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평생교육센터”를 “인구교육과”로 한다.

㉗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평생교육센터소장”을 “인구교육과장”으로 한다.

㉘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농촌진흥과장”을 “행복농촌과장”으로 한다.

㉙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농촌진흥과장”을 “행복농촌과장”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부서나 부서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나 부서장 등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제10조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거창군 보건소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079	거창군 일원
주상면 보건지소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655	주상면 일원
웅양면 보건지소	거창군 웅양면 원촌4길 14-9	웅양면 일원
고제면 보건지소	거창군 고제면 입석1길 6	고제면 일원
북상면 보건지소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2313	북상면 일원
위천면 보건지소	거창군 위천면 원학길 325	위천면 일원
마리면 보건지소	거창군 마리면 거안로 845	마리면 일원
남상면 보건지소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827	남상면 일원
남하면 보건지소	거창군 남하면 무릉4길 19-27	남하면 일원
신원면 보건지소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79	신원면 일원
가조면 보건지소	거창군 가조면 장군봉1길 26	가조면 일원
가북면 보건지소	거창군 가북면 용암로 37	가북면 일원
거기 보건진료소	거창군 주상면 보해길 244-11	거기, 장포, 고대, 원남산, 포덕동, 보광, 송희
강천 보건진료소	거창군 웅양면 강천장교길 19	산포, 우량, 석정, 강천, 금광, 어인, 용전, 군암, 노현
하성 보건진료소	거창군 웅양면 하곡1길 3	송산, 아주, 한기, 신촌, 왕암, 오산, 장지
봉산 보건진료소	거창군 고제면 하구송길 33	탑선, 원기, 원봉계, 와룡, 용초, 구송, 둔기

명칭	위치	관할구역
개명 보건진료소	거창군 고제면 빼재로 1804	개명 1,2구, 수내, 손항, 온곡, 학림, 원궁항, 산양
소정 보건진료소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1205	중산, 소정, 개삼, 탑불
월성 보건진료소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439-14	산수, 월성, 내계, 황점, 병곡
모동 보건진료소	거창군 위천면 빼재로 881	모전, 석동, 원당, 무월, 당산, 황산 1,2구
고학 보건진료소	거창군 마리면 고신1길 14	병항, 고신, 고대, 상촌, 신기, 시목, 엄대, 서편, 동편
율리 보건진료소	거창군 마리면 풍계1길 41	풍계, 상율, 월화, 영신, 학동, 성락
임불 보건진료소	거창군 남상면 임불1길 5	임불, 남불, 월포, 전척, 고척, 한산
진목 보건진료소	거창군 남상면 진목1길 20	춘전, 진목, 남진, 동령, 신기, 둔동, 외등
지산 보건진료소	거창군 남하면 지산로 735-15	자하, 신기, 장전, 천동, 대사, 오가, 대야, 가천, 용동, 월곡
대현 보건진료소	거창군 신원면 대현길 20	내외탐, 소야, 대현, 비곡, 중유, 예동
양지 보건진료소	거창군 신원면 양지3길 4	원동, 양지, 수옥, 저전, 감악, 구사, 신기, 수다
도리 보건진료소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1439	대학동, 화곡, 도산당, 녹동, 부산
용암 보건진료소	거창군 가북면 용암로 717	몽석, 내촌, 송정, 용암, 개금, 공수, 박암, 옥산
중촌 보건진료소	거창군 가북면 가북로 1354	심방, 회남, 중촌, 추동, 해평, 용산, 율리

[별표 2]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26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퍼센트 이상	1퍼센트 이내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26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퍼센트 이내	7퍼센트 이내	28퍼센트 이내	31퍼센트 이내	26퍼센트 이내	7퍼센트 이상

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퍼센트 이내	97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내	92퍼센트 이상

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분	6급 상당
비율	100퍼센트 이내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7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702 679	322 286	14	134	67 70	67 64	41 54	40	151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670 647	318 282	14	107	40 43	67 64	40 53	40	151
	4급	1	1							
	4~5 급	3	2		1		1			
	5급	38 35	15 11	3	5	4	1	3 4	1	11
	6급 이하	628 608	300 268	11	101	36 39	65 62	37 49	39	140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5	2		2	2		1		
지도직 (지도사)		25			25	25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발생

나. 관련조문 : 제25조(정원 총수)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구분	국비						
	세출						
	군비	169	1,012	1,032	1,052	1,073	4,338
소계(a)		169	1,012	1,032	1,052	1,073	4,338
총 비용(a-b)		169	1,012	1,032	1,052	1,073	4,338

3. 관련 의견

국가시책과 주민밀착 행정기능 강화에 따라 인력증가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19년 기준)

가. 정원 총수 증원 : 23명

나. 연간 인건비 증가액 : 1,012백만원

기본급 920백만원, 수당 등 92백만원

작성자 : 행정과장 신영수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63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사용방법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는 등 이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상위법령 준용조항 삭제함.(안 제10조제3항)
- 나. 연가 사용 장려를 위하여 연가제한 사유 삭제함.(안 제19조제1항)
- 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함.(안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 1) 지참 ⇒ 지각
 - 2) 행안부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 라.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휴가 사용방법 개선함.(안 제23조제11항)
 - 1) 분할 사용횟수 : 한 번 ⇒ 세 번
 - 2) 2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 10일 ⇒ 20일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8. 14.~9. 3.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한 번만”을 “세 번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일”을 “2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공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파견근무) ①~② (생략)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⑥ (생략)	②~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② (생략)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u>지참·조퇴</u> 및 <u>외출</u>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생략)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지각</u>-----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u>지참·조퇴</u> 및 <u>외출</u>의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산입하지 않는다. 1.~2. (생략) ②~③ (생략)	제21조(병가) ① ----- ----- ----- ----- -----<u>지각</u>----- ----- ----- 1.~2.(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특별휴가) ①~⑩ (생략) ⑪ 군수는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고, <u>한번만</u>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 사용은 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제23조(특별휴가) ①~⑩ (현행과 같음) ⑪ ----- -----<u>세</u> <u>번만</u>----- ----- ----- ----- 1. ----- ----- 2. ----- <u>20일</u> 3. -----
--	---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64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그 내용을 반영하여 군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 변경함.(안 별표 2)

현행	1건 1메가바이트 이내 : 무료 1메가바이트 초과 시 1메가바이트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변경	무료. 다만, 전자파일로 변환 시에는 기존 수수료 그대로 징수

3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별표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8. 8.~8. 29.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전자파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개 대상	공개방법·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 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u>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u> - <u>무료</u>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2분의 1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비디오 자료)의 복제 - 700메가바이트 기준 1건 마다 5,000원 - 700메가바이트 초과 시 350메가바이트 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65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2015. 12. 29.)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 중복 재기재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설공원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함.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나. 조례로 위임된 위임근거와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다. 공설공원묘지의 설치와 명칭 등을 규정함.(안 제2조·별표 1)

라. 공설공원묘지 사용 대상자 명확히 규정함.(제3조)

(현행) 장묘시설 소재지 읍·면을 제외한 타지역 거주자 사용제한

(변경) 사망 시 거창군에 주소를 둔 경우만 사용

공설공원묘지 소재지 읍·면이 아닌 관내 다른 지역 거주자 사용제한

마. 사용료와 관리비 부과·감면 기준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별표 2)

바. 조례로 위임된 공설공원묘지 사용기간 연장 기간 단축 시 15년, 20년, 25년 중의 기간에서 단축 가능하도록 정함.(안 제6조)

사. 유골과 사용료등의 반환 규정을 둠.(안 제7조, 별표 3)

아. 분묘의 형태, 구조, 석물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자. 위탁운영, 읍·면 위임사무 규정함.(안 제9조·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제38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7. 10.~7. 31.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 반영함.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설묘지, 공설봉안 시설, 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관리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3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설공원묘지의 설치·명칭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선된 분묘형태로 매장 또는 봉안하거나 자연장을 할 수 있는 공설공원묘지를 설치·조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설공원묘지(이하 “공설공원묘지”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공설공원묘지의 사용 대상자) ① 공설공원묘지는 사망 시 거창군에 주소를 둔 경우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설공원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 읍·면이 아닌 관내 다른 지역 거주자가 사망하여 해당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할 공설공원묘지의 선정은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③ 공설공원묘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개장 유골을 매장이나 봉안, 자연장을 하기 위하여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관내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지장분묘로서 그 분묘의 연고자가 공설공원묘지 사용을 원하는 경우 또는

그 공공사업부지에 사설묘지 설치·신고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사용료와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등)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등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설공원묘지 사용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별표 2의 사용료등을 연할로 계산하여 납부한다.

③ 사용료등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할 때 군수에게 내야 한다.

제5조(사용료등의 감면) ① 군수는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5.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② 군수는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자의 주소가 사용할 공설공원묘지와 같은 법정리일 경우 사용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6조(공설공원묘지의 사용기간 연장)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설공원묘지의 사용기간 연장 기간을 단축할 때에는 15년, 20년, 25년 중 하나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유골·사용료등 반환) ① 군수는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유골 반환을 요청할 경우 그 유골을 연고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공설공원묘지 사용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에게는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사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율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분묘의 형태 등) 분묘의 형태, 구조, 석물(石物)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탁운영) 군수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공설공원묘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위임) 군수는 공설공원묘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공설공원묘지의 사용신청과 사용기간 연장신청
2. 제4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징수
3. 제5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4. 제7조에 따른 유골반환 신청, 사용료등 반환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관리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이 조례 시행 이후 해당 공설공원묘지의 사용기간이 15년이 되어 추가로 15년 동안 그 공설공원묘지를 계속해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종전 조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를 다시 내야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중 연번 5란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공설공원묘지의 사용신청과 사용기간 연장신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5의3	사용료와 관리비의 징수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5의4	사용료와 관리비의 감면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5의5	유골반환 신청, 사용료와 관리비의 반환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별표 1]

공설공원묘지의 명칭과 위치(제2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면적(제곱미터)	장사시설 종류
계	8개소	95,279	
북상공설공원묘지	월성리 산 150	13,075	매장
가조공설공원묘지	일부리 산 5	10,678	매장, 봉안
거창공설공원묘지	가지리 산 170	14,619	매장, 봉안
남상공설공원묘지	무촌리 산 253	12,817	매장, 봉안
가북공설공원묘지	용암리 산 125	10,512	매장, 봉안
고제공설공원묘지	봉산리 1309	15,455	매장, 봉안
웅양공설공원묘지	죽림리 산 108	11,379	매장, 자연장
월평공설공원묘지	월평리 산 201	6,744	매장, 평장, 봉안

[별표 2]

공설공원묘지의 사용료와 관리비(제4조제1항 관련)

구분	사용료(30년)		관리비(30년)	
	기 준	금액(원)	기 준	금액(원)
매장	1기당	600,000	1기당	400,000
봉안묘	1개안치단당	200,000	1개안치단당	200,000
봉안당	1개안치단당	200,000	1개안치단당	200,000
평장	1기당	200,000	1기당	200,000
자연장지	1기당	200,000	1기당	200,000

[별표 3]

공설공원묘지 사용료등 반환기준(제7조제2항 관련)

남은 기간	반환율	남은 기간	반환율	남은 기간	반환율
8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55퍼센트 미만 50퍼센트 이상	45퍼센트	25퍼센트 미만 2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80퍼센트 미만 75퍼센트 이상	70퍼센트	50퍼센트 미만 45퍼센트 이상	40퍼센트	20퍼센트 미만 15퍼센트 이상	12퍼센트
75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65퍼센트	45퍼센트 미만 40퍼센트 이상	35퍼센트	15퍼센트 미만 10퍼센트 이상	10퍼센트
70퍼센트 미만 65퍼센트 이상	60퍼센트	40퍼센트 미만 3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10퍼센트 미만	5퍼센트
6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	55퍼센트	35퍼센트 미만 3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60퍼센트 미만 55퍼센트 이상	50퍼센트	30퍼센트 미만 2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거창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18-66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거창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등

나. 위원회 구성과 임기 등을 규정함.(안 제3조~제6조)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임기 2년

다.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위원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장 직무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제13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6. 21.~7. 11.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반영함.

거창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거창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 가. 성별영향평가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전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18-67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급식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식지원 대상자를 정함.(안 제2조)

수급자·한부모가족 아동,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아동, 보호자가 없는 가구 아동,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등

나. 급식지원 방법을 정함.(안 제3조)

단체급식, 음식점을 통한 급식, 도시락, 식재료 지원 등

다. 급식지원 신청절차,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이의신청 등을 정함.
(안 제4조~제7조)

라.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정함.(안 제8조~제14조)

마. 위생·안전 교육 등을 정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35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예산 553백만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6. 22.~7. 12.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불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함.

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아동
4.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 아동
5. 보호자가 사고·질병이 나는 등 보호자로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하는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퍼센트 이하인 가구 아동
7.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에서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거창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5조제4항과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사회복지사
3. 담당 공무원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제8조에 따른 거창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거창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기능)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와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급식식단 점검·보완에 관한 사항
5. 급식 위생·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 급식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
7.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
8.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9.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0. 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1. 급식지원 추진상황 점검과 개선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급식·식품위생 업무 담당부서장
2. 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3. 아동 급식지원 관련 기관, 단체·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아동 급식지원 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생·안전 교육 등) ① 군수는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위생·안전 교육을 한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위생 등을 감시·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 또는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아동급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checkmark$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	성명	관계	동거여부
	직업(구체적으로)	월수입(평균)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대상아동 1	성명	성별 [] 남 [] 여	취학여부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세)

대상아동 2	성명	성별 [] 남 [] 여	취학여부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세)

신청 의견	신청사유 (자세히 기재)	
	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 중복 선택 가능 [] 연중 조·석식: []조식 []석식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방학 중 중식
	희망 급식 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 도시락 지원 [] 식재료 지원 [] 그 밖의 방법 (_____)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으로 신청(추천)합니다.

신 청 인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뒤 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아동급식 지원

나. 관련 조문 : 제1조(목적)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총 비용		553	553	553	553	553	2,765
세출	군비	553	553	553	553	553	2,765

3. 관련 의견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아동급식지원 : 553백만원

작성자 :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68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조항을 조례로 위임된 범위로 정비하고,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중복·재기재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내체육관 명칭 변경함.(안 제2조)

(현행) 실내체육관 ⇒ (변경) 거창군 체육관

나. 국민체육센터 탁구장 운영시간 변경함.(안 제6조)

(현행) 오전 10시~오후 12시 ⇒ (변경) 오전 10시~오후 10시

다.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규정 보완함.(안 제8조)

1) 체육시설 본연의 용도인 체육행사를 우선허가 하도록 정비

2) 행사나 활동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우선순위 변경 가능 조항 신설

라. 정치나 종교의 목적으로 체육시설 사용 시 제한규정 신설함.(안 제9조)

마. 관람수입의 사용료 납입 규정 정비함.(안 제13조, 제14조)

관람료에 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게 하는 것은 법령 근거 없이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삭제함.

바. 사용료 감면조항 정비함.(안 제15조, 별표 2)

1) 법령 위임 없는 면제조항 삭제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2) 100분의 50 감면조항 신설 :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자녀 이상 다자녀세대 내 18세 이하 자녀 등

사.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별표 1)

수영장 강습회원 강습비, 볼링장 사물함 사용료 별도

아. 고제면 문화체육회관 업무 위임규정 신설함.(안 제23조)

자. 그 밖에 법령 재기재 내용을 삭제하고 용어를 순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7. 30.~8. 2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반영하여 사용료 감면대상 추가함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제2조 다음의 제2장, 제6조 다음의 제3장, 제16조 다음의 제4장, 제22조 다음의 제5장, 제24조 다음의 제6장을 삭제한다.

제1조 중 “군”을 “거창군”으로 “관리 및 운영”을 “관리와 운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실내체육관”을 “거창군 체육관”으로 “부대시설”을 “부대 시설, 고제면 문화체육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제목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입장의 거절·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전염성 질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운영시간 및 휴무)”를 “(운영시간과 휴무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중 개장 및 종료시간”을 “개장·종료 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탁구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공휴일 포함)

다. 볼링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공휴일 포함)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둘 이상 함께 있는 경우”를 “2인 이상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행사”를 “행사나 경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거창군체육회 또는 장애인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대회나 행사

4. 거창군체육회 산하 각 협회, 직장, 일반 동호인조직 등이 참여하는 체육 활동이나 행사

7. 그 밖에 체육시설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이나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행사나 활동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치나 종교 활동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관람 수입료 납입) ①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경우에는 총수입금중 사용료와 제세공과금을 뺀 금액의 20퍼센트(이하 “관람 수입료”라 한다)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총수입금이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만 납입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 수입료는 사용 종료 후 2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정산은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사용료의 감경)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 제목 “(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을 “(사용료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2항·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체육시설 위탁·위임)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경기단체나 체육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3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제16조에 따른 그 소재지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를 위임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를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1(기존 별표)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소재지 체육시설 관라운영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23조	체육시설 사업소
----	---------------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u>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군</u>이 설치한 체육시설의 <u>관리 및 운영</u>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u>실내체육관</u>, 국민체육센터, 사격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궁도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스포츠파크 일원의 시설과 그 <u>부대시설</u>을 말한다. 2.~9. (생 략) 10.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나 국제경기 또는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그 가맹경기단체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11. “체육경기 외의 행사”란 제10호의 체육경기를 제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공공행사나 공연·전람·전시 등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및 그 밖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12.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13. (생 략) 제2장 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3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	<u>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u> <삭 제> 제1조(목적) ----<u>거창군</u>----- ----<u>관리와 운영</u>----- ----- ----- ----- 제2조(정의) ----- ----- 1.----- -----<u>거창군 체육관</u>----- ----- ----- ----- -----<u>부대시설, 고제면 문화체육회관</u>----- 2.~9.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13.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조(시설의 개방) ① <u>거창군수</u>(이하 “군수”라 한다)-----

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u>전염성 질병</u>이 있다고 확인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경기장 및 행사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6조(운영시간 및 휴무) ① 체육시설의 연중 개장 및 종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체육센터 가. 수영장: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공휴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나. 탁구장, 볼링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공휴일 포함) <신설> 2. 제1호를 제외한 체육시설: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6월부터 9월까지의 개장시간은 오전 5시) ②~③ (생략) 제3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u>행사</u>	-----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입장의 거절·퇴장) ----- ----- ----- 1. -----<u>감염병</u> ----- 2. ----- ----- 3. ----- ----- 제6조(운영시간과 휴무일) ① ----- <u>개장·종료 시간</u>----- ----- 1. ----- 가. ----- ----- 나. 탁구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공휴일 포함) 다. 볼링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공휴일 포함) 2. ----- ----- ----- ②~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u>2인 이상일 경우</u>----- ----- 1. ----- -----<u>행사나 경기</u>
--	---

2. <u>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u> 3. <u>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u> 4. <u>직장, 체육동호인조직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u> 5. <u>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u> 6. <u>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u> <신 설> <신 설> 제9조(사용제한)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신 설> 제13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u>체육시설의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관람권(초대권, 초청장 등 무료관람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한다. 이 경우 무료관람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과 같은 것으로 본다.</u>	2. <u>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거창군 체육회 또는 장애인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대회나 행사</u> 3. ----- ----- 4. <u>거창군체육회 산하 각 협회, 직장, 일반 동호인조직 등이 참여하는 체육 활동이나 행사</u> 5. ----- 6. ----- ----- 7. <u>그 밖에 체육시설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이나 행사</u> 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행사나 활동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u> 제9조(사용제한) ----- ----- ----- ----- 1. ----- ----- 2. ----- ----- 3. ----- 4. <u>정치나 종교 활동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u> 제13조(관람 수입료 납입) ① <u>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경우에는 총수입금 중 사용료와 제세공과금을 뺀 금액의 20퍼센트(이하 “관람 수입료”라 한다)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총수입금이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만 납입 한다.</u>
---	--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람권 중 초대권, 초청장 등 무료관람권은 전체 관람권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모금하는 기금을 제외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료 수입총액이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람수입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2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정산은 관계 공무원의 참여 아래 실시한다.

제14조(관람권의 검인 및 매표)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되, 관람권에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군수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제15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2.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군이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② 제1항에 따른 관람 수입료는 사용 종료 후 2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정산은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다.

<삭 제>

제15조(사용료 감경)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제공하는 경우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 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③ 군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유족(배우자 및 유족 중 선행순위자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⑤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여성의 경

우와 그린카드 이용자에게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5. (생략) ② 제13조에 따른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5.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장 관리 및 운영 제18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거창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2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파손, 망실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로 인하여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0조(사용자의 책임) ① ----- ----- ----- ----- ----- <삭 제> <삭 제>
④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	② -----

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용자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5장 체육시설의 위탁

제23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

제22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삭 제>

제23조(체육시설 위탁·위임)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3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제16조에 따른 그 소재지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를 위임한다.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④ 제3항의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체육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3조제4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정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장 보칙 제25조(준용)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제24조(시행규칙) -----필요한-----

[별표 1]

체육시설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1. 체육시설

(단위: 원)

시 설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고
				평 일	공휴일	
스포츠파크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체육경기	1일 1회 3시간 이내	150,000	2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200,000	300,000	
	종합운동장 (트랙)			무료	무료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체육경기	1일 1회 3시간 이내	80,000	1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100,000	150,000	
	다목적구장	체육경기	“	80,000	1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100,000	150,000	
	씨름장 및 소규모공연장	체육경기		무료		
		소규모공연		무료		
	거창군 체육관 고제면 문화체육회관	체육경기	1일 1회 8시간 이내	30,000	1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50,000	120,000	
	골프연습장		월 사용료	70,000		
테니스장	회 원 비 회 원	회 원	월 사용료	7,000		
		비 회 원	일 사용료	4,000		
			월 사용료	20,000		
	게이트볼장			무 료		
	족구장			무 료		
	궁도장			무 료		
	농구장			무 료		
	인라인스케이트장			무 료		
	사격장			무 료		
	파크골프장			무 료		
	그라운드골프장			무 료		

※ 전기(조명포함) 사용료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량에 따라 요금 납부

2. 국민체육센터

(단위: 원)

시 설 명	구 분		어린이·노인	청소년·군인	일반인	비 고
수영장	1회권	개 인	1,500	2,000	2,500	1회 2시간
		단 체	1,300	1,700	2,200	“
	월사용	1개월	30,000	40,000	50,000	“
		12회	16,000	21,000	27,000	“
	<u>수영 강습비</u>	<u>10,000원</u>				
탁구장	1회권	개 인	1,000	1,500	2,000	1회 1시간
	월사용	1개월	15,000	20,000	25,000	“
		12회	11,000	15,000	18,000	“
볼링장	1회권	개인	1,500	2,000	2,500	1회 1게임
	월사용	1개월	30,000	40,000	50,000	1일 2시간
		12회	15,000	20,000	25,000	“
<u>볼링장 사물함</u>	<u>두칸</u>	1개월	<u>1,700</u>			
	<u>세칸</u>		<u>2,500</u>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기준(제15조제1항관련)

감경대상	감경률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 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경기 대회나 행사 3. 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나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군이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팀에 제공하는 경우	100분의 80
다음 각 호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유족(배우자 및 유족 중 선순위자를 말한다)·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6. <u>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 내 18세 이하 자녀</u> 7. <u>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사람</u>	100분의 50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	100분의 30
1.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u>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u> 2. 그린카드 이용자	100분의 10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69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개정('07.3.28.시행)되어 소비자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었는데, 현행 조례는 여전히 「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개정된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 반영함(안 제명, 제1조)

- 1) 제명 :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 「거창군 소비자 기본 조례」
- 2) 위임근거 인용법명 :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기본법」

나. 상위법령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의 목적을 변경함.(안 제1조)

소비자 보호에서 시장경제 주체로서 소비자 권익증진과 소비생활 향상을 통한 군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다.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등을 정함(안 제6조~제13조)

마.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6. 11.~7. 3.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소비자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을 통한 군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① 소비자는 물품이나 용역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있으면 전화·통신·서신이나 방문 등의 방법으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소비자 피해구제(이하 “피해구제”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소비자가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상호·주소와 연락처 등 피해구제에 필요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피해구제 처리)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있으면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사업자에게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나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으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구제 처리 중지) 군수는 피해구제 처리절차 중에 당사자의 소송 제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구제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5조(소비자분쟁해결 의뢰)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사업자나 소비자 어느 한쪽이 합의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소비자의 피해가 여러 명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제6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조정하기 위하여 거창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소비자 권익증진, 소비생활 향상 또는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3.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에 따른 조정대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비자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 ③ 위원회 위원은 학계, 법조계, 소비자·근로자·경제인 단체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소비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제23조에 따라 구성된 거창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거창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70	제출자	거창군수
----------	---------	-----	------

1. 제안이유

경관지구·미관지구 등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용도지역 내 입지가능시설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토지수요에 대응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3조)

- 1)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개략적인 사항도 정하지 않고 군수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반함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함.

2) 법제처협업 자치법규 정비과제

나. 법령 개정에 따라 통폐합되거나 신설된 용도지구 내용에 맞춰 정비

- 1)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통합하여 경관지구로 함.(안 제36조·제44조·제46조·제47조, 현행 제43조·제45조 삭제)
- 2)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통합하여 보호지구로 명칭 간소화(안 제48조·제49조)

다. 생산녹지지역 행위 제한 완화함.(안 별표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너목 허용
라. 보전관리지역 행위 제한 완화함.(안 별표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허용
마.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허용함.(안 별표 18)

-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 농촌융복합시설 건축 허용하여 주민에게 혜택
- 2)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바. 계획위원회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사항 등 반영.

(안 63조의2)

사.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함.(안 별표 23)

1)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200킬로와트 미만 신설

2) 도로와 이격거리 100미터 미만, 주거밀집지역과 이격거리 200미터 미만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7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72조, 제85조, 별표 1의3, 별표 4, 별표 9, 별표 10, 별표 15~19, 별표 22, 별표 23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8. 14.~9. 3.

나) 예고결과 : 결과요약서 붙임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
우림토목설계 사무소	[별표 23]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1.~2.(생략) 3.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높이 1.5미터 이상 울타리(웬스, 차폐수 등)를 설치하고, 2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 완충공간을 확보 할 것. 다만, 발전시설 상호간 접하는 경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단서신설 요구	[별표 23]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1.~2.(생략) 3.----- ----- ----- -----울타리와 태양광 발전시설 사이에 2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 완충공간을 확보 할 것.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 상호간 접하는 경계의 울타리 높이는 1미터 이상, 이격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일부 반영함 : 개발행위 신청자가 개별사업자로 울타리 설치에 대한 사항은 사업자간 분쟁의 소지가 있어 적용하기 어려움. 일부 반영함 : 태양광발전시설로 주변 농경지 피해와 다수민원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동의 사항은 유지
	제20조의3(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유 예시사항과 주민동의 사항 삭제 요구	제20조의3(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주민동의가 있고,지역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각 호”를 “각 호”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목축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 제2항) 중 “제23조 및 제25조”를 “제23조·제25조”로 한다.

② 토지의 경사도·임상 산정방법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20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항을 제2항·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 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기존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경관, 환경, 산림, 재해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별표 23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주민동의가 있고, 지역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 제목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5장·제31조·제33조 제목,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제목, 제50조·제52조·제53조·제56조·제58조 제목 중 “안에서의”를 “안에서”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안에서의”를 “안에서”로 한다.

제35조 제목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 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군사 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 ②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접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38조 중 “안에서의”를 “안에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9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40조제4호 중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41조 중 “등에 의하여”를 “등으로”로 한다.

제42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수변경과지구”를 “특화경
관지구”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44조 제목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를 “(시가지경관지구 안
에서 대지안의 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를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를 “에 따른 도로”로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을 “출입 용이, 경관 향상을 위하여”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6조 제목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등 제한)”르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형태 등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로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미관”을 “경관”으로 “담장 및 대문”을 “담장·대문”으로 “색채 및 건축재료”를 “색채·건축재료”로 한다.

제47조 제목 “(미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을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부속건축물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를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로 “미관”을 “경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한다.

제48조 제목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영 제77조제1항”을 “영 제80조”로 “학교시설보호지군”를 “특정용도제한지구”로 한다.

제49조 제목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중요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를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보호지구”로 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안에서 의”를 “안에서”로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재지구
2. 경관지구(군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3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에서의”를 “에서”로 한다.

제53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8조에 제4항·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 ⑤ 영 제85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1. 영 제85조제10항제1호·제2호에 따른 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제1호는 제외한다)로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3조제4항 각 호 외의 본문과 같은 항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 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이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72조를 삭제한다.

별표 23을 삭제하고, 별표 3, 별표 8, 별표 9, 별표 14부터 별표 18까지 별표 21, 별표 2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4를 별표 23으로 하고 별표 23(종전 별표 24)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8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을 준용한다. 3.~4. (생략)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 - - -에 따라----- - - - 각 호----- - - 한정하여----- 1. 입목축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적합하여야 한다. 2.----- ----- ----- -----<후단 삭제> 3.~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토지의 경사도·임상 산정방법은 영별표 1의2 제1호가목(3)(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3(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 산림, 재해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 하지 아니할 것
2. 주거 밀집지역(가구와 가구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시설부지 경계부터 별표 24에서 정한 거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된 농지(우량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높이 1.5미터 이상 울타리(웁스, 차폐수 등)를 설치하고, 2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 완충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여건상 차폐가 가능한 언덕, 구릉지, 수목과 주민동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

③ ---제23조·제25조-----

제20조의3(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경관, 환경, 산림, 재해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별표 23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삭 제>

② -----

- 1.-----

- 2.-----

<삭 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주민동의가 있고, 지역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별표 1의2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3. (생략)

제5장 지역·지구·구역에서의 제한
제31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3.(생략)

제33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15.(생략)

제35조(수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15. (생략)

있다.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

-----에 따라

-----범위에서

1.~3. (현행과 같음)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 제한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안에서-----

1.~23.(현행과 같음)

제33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

1.~15.(현행과 같음)

제35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특화경관지구-----

1.~15. (현행과 같음)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군사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나목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15.(생략)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하되, 해당 지역의 건폐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가지경관지구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37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1.~15.(현행과 같음)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

-----안에서-----

-----따른다.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 건폐율) --
-----에 따라-----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 높이 등) --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3. (생략)

4. 수변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 (생략)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
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1. ~ 3. (현행과 같음)

4. 특화경관지구: -----

5. (현행과 같음)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

등으로

제42조(경관지구 안에서 대지안의 조경)

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따라

〈작 제〉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
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
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
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동호의 가목,
나목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
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
(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
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략)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3층 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② 군수가 미관지구의 가로경관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정·공고한 높이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4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에 따라-----

② -----에 따른 도로-----출입용이, 경관 향상을 위하여-----에 따른-----

1.~3. (현행과 같음)

<삭 제>

미관지구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 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 적합한 경우

제46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등 제한)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규칙으로 따로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47조(미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6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형태 등 제한)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경관

---담장·대문-----
색채·건축재료-----

제47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경관-----

② 시가지경관지구-----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 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16. (생 략)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17. (생 략)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② (생 략)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제52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 또는 상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80조-----특정용도 제한지구-----

1.~16. (현행과 같음)

제49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1.~17. (현행과 같음)

제50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52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에 따라-----
-----안에서-----

-----해당-----
-----범위-----

1. 방재지구
2. 경관지구(군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5. 경관지구(군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21.(생 략)
②~⑥ (생 략)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6(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21. (생 략)
②~③ (생 략)

<신 설>

<신 설>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 ① -----

- 1.~21.(현행과 같음)
②~⑥ (현행과 같음)

제55조(건폐율의 강화) -----

제56(방화지구 안에서 건폐율의 완화)

제58조(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① -----

- 1.~21.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⑤ 영 제85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

제63조(구성) ①~③ (생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군의회 의원
2. 군의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1. 영 제85조제10항제1호·제2호에 따른 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제1호는 제외한다)로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3조(구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사람-----

1. -----
2. -----
3. -----
-----사람
- ⑤ -----
--한다.-----

제63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u>제72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거창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	<u>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이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u> <u>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u> <u>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 <u><삭 제></u>
--	--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3호 관련)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와 옥외 철타를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집회 시설 중 같은 호 라목·마목의 시설(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매시장·상점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의 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라목, 바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같은 호 가목(옥외 철타가 설치된 골프 연습장은 제외한다), 나목의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 다.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가목, 사목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같은 호 가목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식물 관련시설 중 화초·분재 등의 온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8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주기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식물 관련 시설(작물 재배사, 화초·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9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주유소(기계식세차 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군사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4호 관련)

영 별표 15 제1호·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같은 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농가 주택(기존주택은 증·개축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사목·아목·차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식물 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5호 관련)
 영 별표 16 제1호·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너목으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용 판매시설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정한다), 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 산업생산물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아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6호 관련)
 영 별표 17 제1호·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집회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군이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학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2업의 공장으로 별표 15 제7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군 지역으로 이전 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유독물 보관·저장 시설과 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마목, 사목 및 아목의 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7호 관련)
영 별표 18 제1호·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가목의 창고(농·임·축수산업용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및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 관련)

① 영 별표 19 제1호·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한정한다.

② 영 별표 19 제2호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바목·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용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들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액화가스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 도료류 판매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③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미술관·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1호 관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은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아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료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식물 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와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2호 관련)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군이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자목(1)에서부터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별표 23]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1. 다음 각 목의 기준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발전용량(킬로와트)		나. 도로에서 직선거리(미터)		다. 주거밀집지역이나 관광지 경계에서 직선거리(미터)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200 미만		100		200
299.9 이하	200 이상 300 미만	200	200	300	300
300~599.9	300 이상 600 미만	200	200	400	400
600~999.9	600 이상 1,000 미만	200	200	500	500
1,000 이상	1,000 이상	200	200	600	600

비고

- 1) 발전용량은 연접한 부지 30미터 이내에 태양광발전시설 발전허가를 받고 시행계획이거나, 개발행위준공 1년 이내 또는 시행중인 발전시설을 합산한 용량으로 한다.
- 2) 도로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를 말한다.
- 3) 주거 밀집지역은 가구와 가구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 4) 관광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시설부지를 말한다.

2.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된 농지(우량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높이 1.5미터 이상 울타리(웁스, 차폐수 등)를 설치하고, 울타리와 태양광 발전시설 사이에 2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 완충공간을 확보 할 것.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 상호간 접하는 경계의 울타리 높이는 1미터 이상, 이격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